

의무경찰 선발시험 신체 및 체력기준표(제7조제4항 관련)

1. 신체기준

구 분	기 준
체 격	체격이 강건하고 팔·다리가 완전하며, 가슴·배·입·구강·내장의 질환이 없는 사람
시 력	시력(교정시력을 포함한다)은 양쪽 눈이 각각 0.8 이상인 사람
색 신	색맹이 아닌 사람
청 력	청력이 완전한 사람
혈 압	고혈압(수축기 혈압이 145mmHg을 초과하거나 확장기 혈압이 90mmHg을 초과하는 경우) 또는 저혈압(수축기 혈압이 90mmHg 미만이거나 확장기 혈압이 60mmHg 미만인 경우)이 아닌 사람
문 신	시술동기, 의미, 크기 및 노출정도가 의무경찰의 명예를 훼손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문신이 없는 사람
운동신경	각종 질환의 후유증으로 인한 신경 및 신체의 기능장애로 의무경찰 직무수행에 어려움이 없는 사람

2. 체력기준

종 목	기 준
제자리 멀리뛰기	160cm 이상
윗몸 일으키기	1분에 20회 이상
팔굽혀 펴기	1분에 20회 이상

※ 비고

가.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 표의 기준에도 불구하고 교통·전산처리 등의 특수업무에 복무할 의무경찰에 대하여 그 신체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.

나. 경찰청장 또는 해양경찰청장은 의무경찰 선발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호에서 정한 종목의 기준을 변경하거나 제2호의 종목 외의 종목을 추가할 수 있다. 이 경우 변경된 기준 또는 추가되는 종목이 적용되는 선발시험의 실시 전에 이를 미리 공고하여야 한다.